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. 9. 28 선고 2016가단124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9. 2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2 '이 사건 미등기 무허가 건물'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1 '부동산의 목록'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나. 2016. 7. 5.부터 위 가.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고종완

별지